

I. 첫머리에

호주의 성범죄는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수는 26,312 명이었다(ABS, 2019). 여성 5명 중 1명은 15세 이후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17명 중 1명은 15세 이전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악화일로에 있다. 호주 아동이 겪는 성폭력은 훨씬 더 심각하다. 여아의 경우 3명 중 1명이, 그리고 남아의 경우는 6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바(ABS, 2017), 2005년 기준으로 전체 호주 인구 중 130만 명이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취해진 법적 조치 비율이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39%에 불과하다(ABC, 28 January 2020).

이 글에서는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 행태를 알아보고,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법규, 특히 성범죄 보도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후,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을 다룬다. 끝으로 성범죄 보도에 관한 자율규제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유형: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보도

호주에서 성범죄, 특히 성폭력은 성공적인 기소가 가장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다. 성범죄의 20~25%만이 경찰에 신고되고, 전체 성폭력 사건 중 80%는 사법제도의 무관심 지대에 있다(ABC, 2 September 2016). 호주 언론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불명확한 보도가 많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우선은 성범죄 가해자가 '낮선 사람'임을 암암

* 시드니대 언론학 교수, ki-sung.kwak@sydney.edu.au

리에 강조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신고 건수 중 75%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성폭행 관련 기사는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Morgan & Politoff, 2012). 달리 말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관련 기사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보도 행태를 보면, ‘낯선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성폭행을 보도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현재 혹은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 행태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짓고, ‘성범죄와 낯선 사람의 위험성’이라는 연결 프레임 하에 성폭행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그릇된 관념은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안전보다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안전에만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Morgan & Politoff, 2012).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보도 행태는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이다. 이런 보도는 전형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성폭행을 ‘피해자 탓’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성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런 보도 행태는 가해자의 범행을 희석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피해자 탓하기’는 일종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ABC, 2 September 2016), 남자가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든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식이다. 이런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언론보도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본인의 충격적인 경험을 밝히는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만들 수 있다. 근거 없는 ‘피해자 탓’ 프레임은 성폭행이 만연한 현실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Hartnell, 2017). 성폭행의 근본적인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보도 행태는 성범죄를 코믹하고, 유머스럽게, 혹은 사소하다거나, 심지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 행태는 가해자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마치 가해자를 대신하여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

기도 한다. 이런 선정적인 보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성범죄 보도에 농담조의 말이 포함된다면,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Morgan & Politoff, 2012).

호주 언론의 성폭력 보도방식이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성차별화된(gendered) 성폭력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요한 사회적 이슈(성폭력의 위험성과 만연성,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법 등)로 인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real rape’에 대한 고정 관념, 즉 “전형적인 성폭행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과격한 폭력이 수반된다(Estrich, 1986)”는 전형적인 성범죄 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사건은 성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왔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호주 언론이 이런 고정 관념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보도에만 중점을 두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다(ANROWS, 2015; Morgan & Politoff, 2012).

III. 성범죄 보도 관련 법규와 적용범위

호주의 성범죄 관련 법규는 연방법인 범죄법(Crimes Act 2000) 등에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는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언론 공개 금지’를 규정하는 법은 성범죄 관련 언론공개 금지의 대상과 범위, 조건 그리고 예외 조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표 1).

〈표 1〉 호주의 성범죄 보도 공개 관련 법규 및 내용

관할주 ¹⁾	규정내용	예외	관련 법규
ACT	- 고소/고발인의 실명, 주거지, 직장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됨	-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있을 시 보도가 가능(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함)	Eviden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9, s. 40.
NSW	- 소송이 완료된 후에도 고소/고발인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허락이 있을 경우 - 14세 이상의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있을 경우(법적 조언 요망) - 16세 이하의 고소/고발인에 대해 법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보도 가능	Crimes Act 1900, s. 578A; Children (Criminal Proceedings) Act 1987, s. 15A.

관할주 ¹⁾	규정내용	예외	관련 법규
NT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밝혀져서는 안 됨 - 피의자의 신원은 재판여부 실질검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언급 금지	- 법원의 허가 시 허용	Sexual Offences (Evidence and Procedure) Act 1983, ss. 6, 7, 11(2)
QLD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피의자 신원은 재판여부 실질검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과 피의자의 실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언급 금지	- 법원의 허가 시 허용 -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호는 아래의 경우에만 적용 a) 강간 b) 강간 미수 c) 강간 치사 d) 그 외에 형법 352.1 항이 규정하는 범죄	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1978, ss. 6, 7.
SA	-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 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처음부터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려진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보도했다면,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보도해야 함	-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재판여부 실질검사 전에 보고서 작성 가능 -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있거나 (아동이 관련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고소/고발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음	Evidence Act 1929, ss. 71A, 71B
TAS	- 피고인을 제외한 고소/고발인/증인의 신원은 사망시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인 혹은 증인과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사진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신원보도 허용 가능	Evidence Act 2001, s. 194K.
Vic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소송절차가 미결이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됨	- 재판이 미결인 경우 - 법원이나 고소인의 동의를 있을 경우 - 경찰에 범죄로 고발되지 않았을 경우 공개가능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s. 4.
WA	- 고소/고발인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 됨	- 고소/고발인의 서면 허락이 있을 경우에 공개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18세이상이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Evidence Act 1906, s. 36c.

출처 : <https://journlaw.com/2014/08/13/sexual-offences-publishing-restrictions-in-australia-a-guide-for-journalists/>

1) 호주는 총 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SW(New South Wales), NT(Northern Territory),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 TAS(Tasmania), VIC (Victoria), WA(Western Australia). 엄밀히 말하자면, ACT와 NT는 테리토리(Territory)로 연방정부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6개의 다른 주(State) 들은 연방정부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주'로 다룬다.

아동 대상 성범죄 보도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되는데 재판의 공개 여부, 그리고 언론의 재판 참관과 재판보도 등에 있어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표 2). 타스마니아 주처럼 법원의 허락 없이 언론이 재판을 참관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언론의 재판 참여와 재판에 관한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신상공개 역시 언급이 불가한 지역이 다수이나, 북호주 주처럼 아예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며 조건부로 허용되는 지역도 있다.

〈표 2〉 아동대상 범죄재판 보도 시 규정사항

관할주	규정내용	예외 조항	관련 법규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보도 가능 - 아동 신상 공개: 불가 - 가족단위의 미팅: 보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Criminal Code 2002, s. 712A.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s. 77.
N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재판참여 및 보도가능 - 아동신원 공개: 언급 불가 - 피해자 아동은 물론 희생자나 증인 신분으로 사건에 관여된 아동들의 신원 언급 혹은 보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에 신원공개 허용 가능 - 관련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인 직계친족이 신원공개 허용 가능 	Children (Criminal Proceedings) Act 1987, s. 15A; Children and Young Persons(Care and Protection) Act 1998, ss. 104 and 105; Young Offenders Act 1997, s. 65.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재판참여 및 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Youth Justice Act 2005, ss. 49, 50.
Q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불가 - 아동신원 공개: 언급 불가 - 가해자 아동의 신원은 법원 허가 없이 공개 불가 - 성범죄 사건의 증인아동 신원은 공개 불가 -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 사회에 해를 끼칠 소지가 있거나 위험한 아동의 신원: 공개 금지 - 구금된 상태이거나, 법적 후견인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의 신원: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극악 범죄일 경우 신원 공개 및 언론보도 허용 가능 - 피해자 아동은 성년이 된 이후, 공개될 정보의 본질, 언론수용자, 그리고 공개 이유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 자신의 신원공개 동의 가능 	Youth Justice Act 1992, ss. 234, 301. Child Protection Act 1999, ss. 189, 192, 193.

관할주	규정내용	예외 조항	관련 법규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뉴스 미디어의 재판 참관 및 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피해자 아동은 물론 희생자나 증인 신분으로 사건에 관여된 아동들의 신상(이름, 주소, 재학 중인 학교)을 공개할 수 없음 - 다큐멘터리 형태의 언론 보도는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언론보도나 신상공개 일부 허용 가능 	Youth Court Act 1993, s. 24; Young Offenders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 59, 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s. 13; 59A.
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법원의 허락 없이 불가 - 언론의 재판 참관 불가 - 아동신원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허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따름 	Youth Justice Act 1997, ss. 30, 31; Magistrates Court (Children's Division) Act 1998, ss. 11, 12.
V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공개 재판이며, 언론의 재판보도가 허용되나, 재판장소 공개 불가 - 피해자 및 증인의 특이사항 (성별, 실명, 가명, 거주 지역, 주소, 직장, 재학 중인 학교, 외모, 옷 스타일, 직업, 다른 공개된 사람과의 관계, 관심사, 실물, 개인 재산 등) 공개 불가 - 사진 공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허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에 따름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ss. 523, 534.
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보도: 허용 - 아동신원 공개: 사건에 관여된 모든 아동의 신상공개 금지 - 보호적용대상이거나 보호명령대상인 아동의 신상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특정인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아동의 신상공개를 허락할 수 있음 	Children's Court of Western Australia Act 1988, ss. 31, 35, 36, 36A. Children and Community Services Act 2004, s. 234

출처: <https://journlaw.com/2014/08/21/court-restrictions-on-identifying-children-in-australia-a-guide-for-journalists/>

IV. 성범죄 보도 관련 주요 사례

1. Doe vs.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01년 3월 제인 도우(Jane Doe)는 당시 별거 중이었던 남편(YZ)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1년 후, YZ는 강간 및 그 밖의 다른 범죄로 빅토리아 주 수도 멜번의 한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Doe는 성폭력을 당한 큰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었다. 이런 증상이 만성적이긴 했으나, Doe는 재판 전까지만 해도 집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짧은 기간 동안이긴 했지만 직장도 다녔다.

YZ의 형이 확정된 2002년 3월 21일 호주 공영방송사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오후 4시, 5시, 6시 라디오 뉴스를 통해 YZ의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4시 뉴스와 6시 뉴스에서 YZ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합법적인 부부 관계 상태에서 행해진 성폭행이라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동 뉴스는 또한 범행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설명하였다. 5시 뉴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보 외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녀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도했다. 피해자 Doe는 성폭행을 당한 후, 결혼 전의 성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ABC> 뉴스에서 이 원래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ABC>의 보도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재판 관련 보도법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해당 뉴스보도의 관련자들은 유죄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는 서면 편지에 서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뉴스 프로그램의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차장, 이들의 고용주인 <ABC>를 성폭행 피해자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재판 관련 보도법(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s4 (1A))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 관련 보도법 4 (1A)항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이나 범죄법 (Crimes Act 1958 35조)이 명시하는 성적 관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 Doe는 <ABC> 방송보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상의 근거로 다음 4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즉, 법정 의무 위반(breach of statutory duty), <ABC>의 부주의한 신상 공개로 인해 원고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를 방조한 의무 불이행(breach of a duty of care), 비밀 누설(breach of confidentiality),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반(breach of privacy)이다.

<ABC>는 이 모든 혐의를 반박했다. 첫째는 피해보상법(Wrongs Act 1958) s.4조에 의거하여, 언론은 법정재판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에 있어 ‘보도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법 s.4조는 “사법재판소, 법적으로 구성된 법원, 혹은 법이 정하는 조사위원회의 재판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을 막는 행위나 제재를 금지한다. 단, 음란하고 모욕적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 혹은 판사나 재판관이 언론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갖는 보도특권에 대해 원고가 <ABC>를 소송한 것은 잘못이라 주장했다. 또한, 설사 위의 법 조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지는 못할 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소 항목은 4가지의 근거 항목보다는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ABC>는 원고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방송된 이후 입은 피해 손상 역시 ‘명예훼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원고가 제3자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ABC> 뉴스 방송의 정보 전달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배상의 근거는 ‘명예훼손’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ABC>뉴스에서 재판이 완료된 후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재판 관련 보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재판은 누구라도 법정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상은 이미 그 때에 다 노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실명 역시, 원고가 다수(14명)의 친지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화를 나누었던 다수의 친지와 친구는 원고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믿음 하에 원고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감이 있었던 바, <A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BC>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정보가 공개된 후 명예훼손을 입었고 그 때문에 피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관련 보도법(s.4 (1A))이 그런 정보 공개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BC>가 원고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 배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고가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원고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본인이 입은 피해 때문이라고 보았다. 재판을 맡았던 험펠(Hempel J) 판사는 본 사건이 ‘명예훼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배상 근거 요소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밝히고 있다(Country Court of Victoria, 2007).

(1) 의무 불이행(Breach of duty of care)

공영방송의 법정 기능은 뉴스 보도 시 기자와 편집 담당자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에 위반되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폭력의 본질과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피해자 신상공개는 법적 금지사항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언론의 ‘의무 불이행’을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행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Greenleaf, 2007). 엄격히 말하면, 의무 불이행 여부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불법행위 혐의자가 저지른 활동의 본질, 그리고 피해자가 입을 피해의 본질 등을 고려해야 된다. 즉, 원고가 입을 정신적 충격은 <ABC>와 청취자 간의 관계에 관한 의무 여부가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ABC>와 법이 보장하는 정보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 간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본 것이다.

(2) 비밀 누설(Breach of Confidence)

법원은 <ABC>가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비밀을 누설한 불신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보의 성격, <ABC>가 정보를 입수하게 된 정황, 그리고 재판 관련 보도법이 갖는 효력이 그것이다(Country Court of Victoria, 2007).

성폭력 관련 정보는 사적인 정보임이 분명하다. <ABC>는 관련 정보를 가해자인 YZ 재판 당시 판사의 발언과 판결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재판 관련 보도법상 보도 금지 대상 정보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임이 명확하므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성폭행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적 정보를 의미하진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 관련 조사와 기소에 가담했던 경찰과 의료요원 등도 원고가 '신뢰하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Butler, 2007). 따라서, 원고가 관련 정보를 가까운 친구와 친지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 <ABC>의 정보 공개는 원고의 기대에 반하는 비밀을 누설한 불신 행위로 본 것이다.

(3) 프라이버시 위반(breach of privacy)

법원은 <ABC>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ABC>가 공개했던 개인정보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였고, 관련법상 공개 금지된 정보이며 또한 '공익을 위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공개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과 영국에서 사생활 관련 재판에서 흔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와의 연계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비밀유지 의무'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관련 정보가 비밀 정보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 하에,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본질은 '비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공개재판을 통해 정보가 이미 알려졌더라도 재판 관련 보도법에 의거하여 그 정보는 '비밀'로 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Carroll & Bennett, 2007).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 근거를 전부 받아들여, <ABC>는 고소인에게 234,190 호주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언론이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건 관련 언론인들이 이미 죄를 인정하고 서면으로 사과를 했음에도, 그들에게 과해질 법적 책임을 경감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감해주기보다는, 재판부는 이런 서면 사과를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호주 언론 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는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공공정책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였다(APC, 2007 May). 또한, 언론의 주 관심사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여지가 있는 이슈(예를 들면, 사생활이나 인격권)에 대해서 법규에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유화적인 접근방식이 피

고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키게끔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APC, 2007 May).

2. 피해자의 말할 권리 관련 사례

최근 성범죄 보도와 피해자 인격권 관련해서 피해자의 '말할 권리'가 호주의 일부 주에서 제기되고 있다. 타스마니아와 북호주(Nothern Territory) 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언론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언론을 통해 피해자라고 밝히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의 주된 목적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조치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 타스마니아주

1) 그레이스 테임(Grace Tame) 사례

2010년 그레이스 테임(Grace Tame)은 타스마니아(Tasmania)주 수도인 호바트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2010년 중반 당시 그레이스가 다니던 학교의 수학 선생이었던 니콜라스 베스터(Nicholaas Bester)는 당시 15살이었던 그레이스를 학교 내의 과학실로 불러 성희롱하는 것을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학교와 호텔, 심지어는 친구의 집에서도 그레이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베스터는 그레이스로 하여금 가족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믿도록 세뇌시켜 가며 협박을 일삼았다.

2011년 경찰이 베스터를 체포할 당시, 그가 소유했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베스터는 '아동과의 성관계' 및 '아동 성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불륜관계' 등의 여러 추측성 기사들도 나왔다. 베스터는 이 사건으로 2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19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5년 베스터는 자신이 저질렀던 성폭행을 자랑삼아 공개했다. "호주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 "나는 59살이었고 그 아이는 15살이었는데 굉장했다

(ABC, 12 August 2019)”며 페이스북을 통해 떠벌린 것이다. 게다가 성폭행 당시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베스터는 4개월을 더 수감하게 된다. 두 번씩이나 수감이 되었음에도, 베스터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성 치료전문가인 베티나 아른트(Bettina Arndt)는 베스터와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레이스의 실명을 밝혔고, 사진도 올렸다. 이 인터뷰에서 베스터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잃었고, 37년 간의 결혼생활, 아이들,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걸 잃었다(ABC, 12 August 2019)”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동정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범죄를 회석하려 했다. 더구나, 이 인터뷰에서 치료전문가 베티나는 베스터가 젊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게 되었다며 베스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즉, “남자 선생님들은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여학생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거부당했다거나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거짓 고소도 할 수 있다(cited in Funnel, 2019b)”라고 말하여 마치 베스터가 피해자고 그레이스가 공격적으로 유혹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언론으로 간주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문제의 인터뷰에서는 피해자 의견은 전혀 없고, 심지어 관련 재판에 참석한 적도 없는 베티나가 인터뷰 진행 중 그레이스의 실명과 그레이스의 페이스북에 있는 그녀의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유튜브가 방송된 후, 베티나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해당 유튜브는 방송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비디오는 삭제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20년 1월 베티나가 호주 정부에서 수여하는 Australian Order 훈장 수여자 후보로 발표되었다. 당시, 빅토리아주 수상 등 전국의 저명인사들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을 호주 총독(Governor General)에 올렸다. 그레이스 역시 이 청원에 동참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청원에도 불구하고 베티나는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한 그레이스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타스마니아주 법이 걸림돌이었다. 그레이스는 니나 퍼넬(Nina Funnell)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니나는 성폭행 피해자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면서 성폭행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와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反) 성폭행

지지자이다. 나나는 그레이스와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개정하고자 #LetHerSpeak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수많은 저명인사들과 #MeToo 캠페인 관련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타스마니아 주 법무장관은 2019년 말 기존 증거법 194k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4월 마침내 개정법은 발효되었다.

2) 자넬 오코너(Janelle O'Connor) 사례

1993년 12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넬 오코너(Janelle O'Connor)는 타스마니아 주의 작은 도시인 Burnie에 있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인 Glen, 그리고 3명의 낯선 사람들과 파티에 가던 중, 당시 29세의 Geoffrey Haywood이 주도하여 자넬을 집단성폭행하였다. 이미 살인 등 전과가 많았던 Haywood 등은 1995년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자넬이 겪은 이 사건은 법원 밖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0대의 피해자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재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런 힘든 경험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조차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25년이 지난 2019년, 가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성폭행 피해자로서 내 이름으로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현실은 분명 부당하다. 내 이름도, 내 얼굴도 없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다(cited in Funnell, 2020a)”며, 자넬은 자신이 직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자넬은 또한 본인이 겪은 일을 회고록으로 출판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판사가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했다. 실제로 2012년 타스마니아주의 한 신문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신문사는 즉시 기소되어 결국 2만 불의 벌금을 내야 했다(Funnell, 2019a).

문제가 되어 온 증거법(Evidence Act 2001 194k조)에 따르면, 설사 피해자가 공개 당시 성인이고 또한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 명령 없이 성범죄 재판에 연루된 피해자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법 194k조의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정 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기록 문서, 유·무선 텔레비전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 이름, 주소, 혹은 아래의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그 밖의 참고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i) 형법상 적용되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 ii) 경찰 범죄법상 성행위법 행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 iii) 상기 i), ii)항 관련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이나 증인 예정자
- ㉡ 상기 언급된 인물들이라 추정될 수 있는 사진
- ② 법원은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상기 항에 의거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 ③ 법원은 특정 조건에 따라, 상기 항에 의거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④ 본 조항을 위반하여 위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은 ‘법정 모욕’ 대상자로 분류되고, 그런 행위는 법원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주요 골자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증인 혹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법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정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전제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성폭행 가해자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자랑인 양 밝히거나 심지어는 희석시키려는 시도까지 하는 반면, 피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다는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왔다.

이를 인지하여, 타스마니아 주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끔 기존 증거법 194k조를 개정하였고, 이 개정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Evidence Amendment Bill 2020). 기존의 증거법은 성범죄 재판 진행 중에 법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상 공개

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의 명령 없이도 언론이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이로 인해 공개를 원치 않거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개정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연루된 증인이 피해자의 신원과 연관될 수 있는 친지이거나 친구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1990년대의 Burnie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구 1만 여명의 소도시에서 가십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소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정작 피해자의 신상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2) 북호주주

1) 라비니아 두가(Lavinia Duga) 사례

2017년 10월 5일 퀸즈랜드(Queensland)주에 살고 있던 라비니아 두가(Lavinia Duga)는 출장 차, 북호주의 수도인 다윈(Darwin)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다윈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던 YZ는 라비니아에게 시내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YZ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라비니아 가족과는 잘 아는 가족의 일원이었기에, 라비니아는 그를 믿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틀 동안 시내 관광을 한 후, YZ는 다윈 교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영할 만한 장소로 가는 길에 친구들을 데리러 간다고 하며 군인 막사로 라비니아를 데려갔다. 그러나, 막사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은 없었고 라비니아는 그 곳에서 YZ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 라비니아는 분명하게 'No'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YZ는 멈추지 않았다.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라비니아는 퀸즈랜드 집으로 돌아왔고 수 주 동안 고민 끝에 11월 다윈경찰청에 신고하려 했으나, 다윈경찰청의 권고에 따라 퀸즈랜드주에 있는 경찰서에 성폭행을 신고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YZ는 라비니아가 'No'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이 멈추질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No'라는 의사를 가볍게 받아들였고, 라비니아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YZ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라비니아는 YZ가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를 것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몇 달 후 현실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YZ는 라비니아에게 저지른 유사한 수법으로 타 주에서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19년 YZ는 라비니아에게 범한 성폭행과 그 이후 또 다른 여성에게 범한 유사 성폭행 두 개의 사건을 같은 혐의로 다루는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판사는 두 사건의 배경과 정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기 범행 후, 몇 달 되지 않아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YZ는 검사와의 타협을 통해 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 말,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실의에 빠져있던 라비니아는 언론을 통해 YZ의 범죄를 막고자 했다. 라비니아는 언론을 통해 본인이 겪은 이야기와 현 사법제도가 성폭행 피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북호주법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당사자의 실명공개 동의가 있더라도, 언론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Funnel, 2020b). 이 뿐만 아니라, 라비니아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고, YZ이 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가 없었다. “마치 나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cited in Funnel, 2020b)”던 라비니아는 2019년 #LetHerSpeak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말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은 북호주(Northern Territory)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성범죄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언론을 통해 출판·진술 혹은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2) 동의 당시에 성인이어야 하고, (3) 출판·진술, 발표할 내용 중 본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포함될 경우 그들의 동의 없이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2020).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무기력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킬 수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한 성폭행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Funnell, cited in ABC, 22 October 2019).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원인 및 결과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호주 입법심의 위원회는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현행법(Evidence Act)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2019년 말 개정 권고안 Sexual Offences(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2019을 제출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피해자의 공개 시점’이었다. 피해자 자신에 의한 언론 공개는 기본적으로 재판이(재심이나 항소 등 포함)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사법적 결정에 따라 재심이나 항소 진행 중에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2020). 이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한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은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정해야 한다. 피해자들 중 다수가 본인의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Funnell cited in Timebase, 6 December 2019).

하지만, 2020년 6월 개정안을 검토한 북호주 법무부장관 나타샤 파일스(Natasha Fyles)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판 종결 전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유지에도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Daily Hansard, 24 June 2020).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원고)는 자신에 관한 신상공개와 정보공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호주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언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 간의 균형잡기라는 중요 사안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침내 2020년 중반, 북호주주는 개정법을 발효하게 되었다. 라비니아는 북호주주에서 개정법 하에 최초로 성폭행 피해자로서 말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3. 가해자 신상보호 관련 사례

(1) 데런 힌치(Darryn Hinch) 사례

데런 힌치(Darryn Hinch)는 호주의 유명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아동 학대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 그는 소아성애(paedophile) 혐의자 및 피의자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여러 차례 범법 혐의를 받게 된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그는 ‘법정 모독죄’로 고소 당하거나 혹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주 대법원 판결 시 판사가 “힌치는 법 위에 균립하려 한다(Masters, 2011:198)”고 할 정도로 힌치는 아동 학대, 특히 성적 학대에 대한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고 실제로 호주 사회에서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이 이슈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넣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1985년, 힌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아성애자 관련 재판을 맡고 있던 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금지 대상이었다. 그 이듬 해 역시, 라디오 프롤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카톨릭 신부의 과거 성범죄 내력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1994년에는 자신이 진행하는 <채널 10>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8세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힌치는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 하에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그 ‘동의’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신상은 힌치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내용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5년, 빅토리아주의 성범죄자 감시법(Serious Sex Offenders Act 2005) 시행과 함께 범법자를 감시함에 있어 빅토리아주 대법원의 ‘보호관찰 명령권’이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 법원의 명령권은 ‘공익’ 여부에 따라 발효되며, 범법자의 가석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들의 갱생 과정을 추적,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동법 s42조는 또한, 법원이 범죄자의 신상공개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열린 다수의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빅토리아주 지법은 동법에 의거하여 신상 공개 금지 명령권을 발동했는데, 힌치는 이런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금지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에 소환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치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본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금지 대상 인물

의 실명 등 신상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올렸다. 결국, 힌치는 s42조 관련 항목의 위헌성 여부를 묻고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힌치는 관련 항목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점 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① 호주 헌법 3장이 부여하는 묵시적 자유를 위반하여 빅토리아 법원이 사법권의 '제도적 결집력'을 저해하고,
- ② 호주 헌법 3장은 모든 주의 연방법원은 '일반에 공개되고 법원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42조는 이런 공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동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의 자유를 제한한다.

힌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은 s42조가 규정하는 사법권은 연방법과 주 정부법 간의 엄격한 사법적 적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High Court of Australia, 2011 [80]) 사법권의 '제도적 결집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두 번째 제기 이유에 대해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종의 보조 기능인 법원의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재판 원칙은 절대적일 수 없고, 주 의회도 공개 재판 원칙의 예외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High Court of Australia, 2011 [90]). 그러나,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혹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공개 재판 원칙을 가급적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High Court of Australia, 2011 [27]). 따라서, s42조는 법정의 본질적인 특성, 즉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힌치가 제기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법이 규정하는 모든 제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며, 법원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는 별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법원의 이런 주장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Trindade & Condello, 2017)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힌치 측 변호인은 힌치가 피의자의 이름만 밝혔을 뿐, 피의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직장, 신체적 특징 등)는 공개하지 않았던 바, 이를 신상공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신상공개'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언론이나 언론인이 아동 성학대 가해자 및 피의자의 실명을

밝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있는 법원의 공개 금지 권한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조지 펠(George Pell) 사례

조지 펠(George Pell) 신부는 1996년 존폴 II 교황(Pope John Paul II)으로부터 멜번 교구 대주교로 임명된 후, 멜번 소재의 세인트 패트릭(Saint Patrick) 성당에서 재직하다가 2003년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2014년에는 프란시스 교황(Pope Francis)에 의해 펠 대주교는 바티칸 교황청의 재정 책임직인 경제 사무국장(Secretariat of the Economy)으로 임명되어 아동 성범죄사건 재판 전까지 바티칸에서 재직 중이었다.

펠 신부의 아동 성범죄 연관성에 대한 의심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02년 펠 신부는 국가 전문직 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Professional Standards)에 의해 아동 성희롱 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는데, 고발 이유는 1961년 당시 20세의 신학생이었던 펠이 당시 12세였던 아동을 성추행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대법원 판사는 고발인의 진술이 진실되지만 ‘범죄’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2012년 빅토리아 주의회는 아동 성폭행/추행 관련 가해자를 고발할 목적으로 ‘종교 집단 및 그 밖의 집단의 아동 성폭행/성추행 처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빅토리아 주경찰청은 펠 추기경이 공개되지 않은 중범죄에 관여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6월 빅토리아주 경찰은 1990년대 말 펠 신부가 멜번 소재의 세인트 패트릭(Saint Patrick) 성당에서 재직 당시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그 이듬해에는 공개 어필을 통해 1970년대 말 빅토리아주 소재 발라렛(Ballarat)시에 있던 한 수영장에서 펠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당시 8세의 소년)가 실제 존재했음이 밝혀졌다(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펠은 당시 발라렛에 있는 세인트 알리피우스(Saint Alipius) 교구에서 교육을 대리 담당하고 있었다. 펠 신부의 성폭(추)행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펠이 1990년대와 1970년대 범한 죄를 각기 다른 혐의로 취급하여 1, 2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가릴 것을 지시했다. 2018년 5월, 법원은

1차 재판이 2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 공개 금지명령(suppression order)’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면,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언론보도 공개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언론이 보도할 수 있었던 내용은 펠이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정도였고, 그 이상의 상세 내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빅토리아주 검찰청장 케리 주드(Kerri Judd)는 “언론의 무분별한 사건 보도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내외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신원을 부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보도 공개금지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보도공개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2018).

엄격히 말하자면, ‘공개금지 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호주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호주에서 발행되거나 호주로 방송되는, 혹은 호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해외언론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호주 국내 언론사들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정기적으로 재판을 관망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도통제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역시 이 보도 통제에 대해 이미 추측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1차 재판에서 펠 추기경이 유죄로 판결되었을 당시, 호주의 언론은 ‘정보공개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호주 언론은 펠 추기경 측이 2차 재판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의 ‘정보공개 금지 명령’ 준수 지시를 잘 이행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인터넷이었다.

1차 재판 판결 선고 이후, 재판을 관망하지 않았던 해외 언론들이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올라왔다. 그러나 취재를 하기보다는 보도자료나 발췌 기사에 근거하여 기사를 찍어 내듯이 대량 생산하는 ‘온라인 처널리즘(churnalism)’이 만연하는 현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다른 온라인 매체나 온라인 사이트들은 단시간에 이 기사를 복사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순식간에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뉴스로 넘쳐났다.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전한 해외언론 보도 수는 140여 개에 달했다 (MEEA, 2019).

몇몇 해외 언론사들은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뉴스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반면, 대부분의 해외 언론사는 이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유죄 판결을 보도했지만, 이 뉴스가 호주에서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Meade, 2019). 이를 위해 <뉴욕 타임스>는 오프라인으로만 이 뉴스를 발행했고, 해당 뉴스 인쇄판을 호주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데일리 비스트> 웹사이트는 호주인들이 해당 기사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지오 블로킹(geo-blocking)을 통해 호주로부터의 해당 기사 접속을 차단시켰다. <워싱턴 포스트>는 판결이 난 다음 날,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날은 공개금지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논평을 내기도 했다(The Washington Post, 12 December 2018). 미국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은 호주법상의 공개 금지 명령에 의거하여,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AP>, <Reuters> 등 호주에 지사가 있는 언론사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못했다.

2017년 7월, 펠 추기경 사건의 법정 심리 당시 검찰은 소송 심리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언론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될 것이라 이미 경고한 바 있었다. 실제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펠 추기경의 경우, 과거에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도 소송기간 동안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공식적인 정보만을 보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범죄 부분이나 소송 절차 부분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나 법원과 논쟁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이었다. 이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유죄 판결 소식을 보도한 해외 언론과는 달리, 호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금지 명령으로 인해 이 소식을 보도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재판에 관한 어느 부분도 언급할 수가 없었으며, 간략한 뉴스만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호주 언론은 1면에 이런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선고 다음 날, <헤럴드 선(Herald Sun)>지는 1면을 검정 바탕 배경에 “검열”이란 단어를 큰 글씨로 제일 윗줄에 표시했다. 그 아래에는 “온 세상이 빅토리아주 사람들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저희 신문은 이 중요한 뉴스를 상세히 보도할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당연히 읽어야 할 뉴스인데 말입니다”라고 기술했다. <데일리 텔리그래프 (Daily Telegraph)>지는 “호주에서 가장 엄청난 뉴스”라는 문구로 1면을 채웠다.

2019년 2월 검찰이 2차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공개금지’ 명령은 철회되었고, 호주 언론은 그때서야 유죄 판결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빅토리아주 검찰청

은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의 자회사인 <The Australian>, <채널 9(멜번)>, <The Age>, <머쿼리 미디어 (Macquarie Media)>, <ABC 라디오(빅토리아 주)>, 그리고 기타 소규모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편집인, 방송인, 발행인 등 100여 명에게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위반을 통보했다(Meade, 2019).

펠 추기경은 1차 재판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심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2020년 2월 석방되었다. 그의 석방에 대한 법적 논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법원은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200여 건에 달하는 기소장을 발송했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기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펠 추기경의 석방 후에도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30여 건의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총 11개의 언론사와 19명의 언론인은 2020-2021년 법정 모독죄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언론인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언론사에게는 50만 불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Cooper, 2020). 펠 추기경 성범죄 사건의 언론보도는 소위 '언론 재판' 관행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언론이 특정 사건 재판 전에 보도해야 하는지, 재판 후에 보도해야 하는지, 재판 진행 중에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펠 추기경 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양극화를 지나치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은 언론의 책임,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언론 재판'이란 개념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언론보도 공개금지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3월 <ABC>는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 학대 스캔들을 집중 조명한 영화 분량의 탐사보도를 3부에 걸쳐 방송했다. 3월 17일과 3월 24일 방송된 1, 2부에서는 아동 성학대로 수감되어 있는 두 신부 빈센트 라이언(Vincent Ryan)과 버나드 맥그라스(Bernard McGrath)가 저지른 범행의 본질과 그들이 감추려 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3월 31일 방송된 3부(Revelation)에서는 펠 추기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당시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가해 신부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3부에서는 2017년 당시 멜번 <ABC>의 탐사보도 기자로 펠 추기경의 아동 성범죄를 상세히 추적했던 루이스 밀리간(Louise Milligan)도 등장해 펠 추기경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러나 4월 7일, 고등법원의 펠 추기경 사건 파기 판결이 난 직후 <ABC>는 이미 방송되었던 3부를 삭제하고, 재편집된 3부 방송분을 <ABC>의 다시보기 채널인 <iView>에 올려야 했다. 펠 추기경 사건이 판결나기 며칠 전, 펠 추기경의 혐의를 상세히 보도했던 <ABC>로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3부에 걸친 탐사보도 외에도 <ABC>는 시사프로그램인 <7:30 Report>에서 루이스 밀리간 기자가 펠 추기경의 혐의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루이스 밀리간 기자는 2017년 ‘펠 추기경의 명암(Cardinal: The Rise and Fall of George Pell)’이라는 책을 통해 펠 추기경의 혐의를 폭로한 바 있었다. 이 책은 출판 2주만에 재판이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그러자 <헤럴드 선>지의 고정 기고자이며, 보수 성향의 정치 해설가인 앤드루 볼트(Andrew Bolt)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ABC>에 대한 비평을 쏟아냈다. 한 나라의 공영 방송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펠 추기경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끔 설득력 없이 추기경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펠 추기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볼트는 무고한 사람을 비방하고, 파멸로 이끌어 마침내 감옥으로 보내는 데 <ABC>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볼트는 또한, 머독(Murdoch) 소유의 News Limited 자회사인 <Sky News>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펠 추기경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ABC>의 재원 중에는 천주교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ABC>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쪽으로 편향된 관점만 보여준다면 이는 공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ABC>의 보도내용을 비난했다(Sky News Australia, 21 April 2020). 이에 대해 <ABC>는 공익에 필요한 뉴스를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보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V. 성범죄 보도 관련 자율규정

호주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관한 규정이나 수칙만을 종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은 없다. 각 언론사 역시 성범죄 보도에만 적용되는 윤리강령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호주 전국 미디어 종사자 연합회로 구성된 호주 언론인 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의 자율 규정은 성범죄 보도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모든 보도의 정확성·진실성,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보도는 각 사건의 사실 즉, 보도 허용 범위 내에서의 가해자의 신상, 범죄

장소, 날짜 등에 입각하고 있어야 하며, 성범죄가 발생한 정황과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MEEA Fact Sheet). 호주의 신문·잡지의 심의기구인 호주 언론 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의 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성범죄에만 특정되는 항목은 없고 ‘가정 폭력 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호주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예를 들면, 가정 (성)폭력을 보도할 때 언론사들은 40여 개에 달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APC, 2016).

하지만, 성범죄 보도에 관한 자율규정이나 방향 제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주 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피해자/희생자 서비스(Victims Service)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이 어떻게 언론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언론 공개 시의 장·단점, 언론 공개가 경찰 조사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과의 인터뷰 시 주의할 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언론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는 범죄에 대해 보도할 수 있으나, 일단 기소된 이후에 보도되는 사건 관련 내용이나 의견 보도는 배심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이런 보도는 금지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Victims Services, 2011).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언론의 신상 보도금지 규정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범죄법(Crimes Act 2000) 578a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은 실명·거주지 주소·다니는 직장 혹은 학교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암시하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Crimes Act 1900, 578a조). 동법은 또한, 14세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는 언론이 본인의 실명이나 사진(혹은 둘 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의 경우, 언론의 자체 윤리규정은 따로 없으며, 각 주 정부 산하의 아동/여성 복지나 가정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 기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관한 자율 규정은 가정 폭력이나 여성 폭력에 관한 보도기준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 한 예로, 호주 연방 수도권(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 위치한 여성 건강 문제 센터(WHM: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는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폭력 보도 자율 규정

성폭력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겁에 질리게 하거나, 혹은 위협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물리적 폭력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법 위반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다음의 성적 행위들은 성폭력이라 볼 수 있다(WHM, 2014b).

- 성희롱(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농담)
-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접촉
- 강제로 성적인 장면(포르노물 포함)을 보게 하는 행위
- 관음증(동의 없이 은밀한 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 성적 본능에 의한 위협이나 협박

여성 건강 문제 센터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HM, 2014b).

- ‘성폭력(혹은 ‘성폭행’이나 ‘강간’)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성폭력을 ‘성관계’ 혹은 ‘섹스’ 등 불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는 피해자가 겪은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을 축소시키거나 사소한 범죄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성폭력’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은 경우에 따라 성폭력 당시의 상황 보도를 생략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성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모든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다든가 혹은 잘못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성폭력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든가, 혹은 피해자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든가와 같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직업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는 가해자의 폭력 사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해자의 폭력 사용과도 전혀 무관하다.

- 성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사소한 문제로 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어조로 보도해서도 안 된다.
- 성폭력에는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강간당하다’와 같은 피해자에게 생긴 일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사는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누군가가 이 폭력을 저질렀으며, 이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
-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사건이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공개 여부에 관한 법적 허용 범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낯선 사람의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면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정 관계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
- 피해자 관련 소식을 보도할 때, 극도의 세심함과 최상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심한 수치감과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건이 수 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보도 프레임을 짤 때, 성폭력 관련 국내외 통계 자료를 사용하라.
- 성폭력 사건에는 남녀의 성적 특징(gendered dimension)이 있다. 성폭력은 단 한 번으로 그치고 마는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과 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남성보다는 여성과 아이들이 빈번하게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적합한 용어로 인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 등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피해자’란 용어는 과거에 성폭력을 겪었던 사람

을 지칭하기도 한다.

-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상 전화 번호, 성폭력 상담 및 신고 번호 등이 있다.
-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라. 성폭력 보도 시, 경찰이나 사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의견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아동 성폭행 보도 자율 규정

아동 성폭행은 성인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6세가 보통이다) 이하의 아동 간에 행해진 모든 성적 행동,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두 미성년 간의 성적 행위, 그리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성인(부모나 학교 선생 등) 간의 성행위를 뜻한다. 이런 성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WHM, 2014a).

- 성기, 손가락, 혹은 다른 물체를 이용한 성관계
- 오랄 섹스
- 성기, 가슴 혹은 그 밖의 다른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행위
- 포르노 영화나 잡지 등의 외설물에 노출시키거나 관여하게 하는 행위
- 관음증(은밀한 행위를 지켜보는 행위)
- 노출증(성기나 다른 은밀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 성적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등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하는 행위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 센터의 아동 성폭행 보도 수칙

성폭력/가정폭력 위기 센터는 아동 성폭행 보도 수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HM, 2014a). 일반 성폭력 보도수칙과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보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 ‘아동 성폭행’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아동 대상의 성폭행을 ‘성관계’ 혹은 ‘섹스’ 등 불명확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겪은 치명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사소한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아동 성폭행’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에 조금이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은 필요하다면, 성폭행 당시의 상황 보도를 생략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아동 성폭행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성폭행은 모든 경우에 성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 피해자가 성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든가, 혹은 잘못이 아동에게 있다든가 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어떤 용어나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당한 성폭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 아동 성폭행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온다. 아동 성폭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사소하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어조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보도 프레임을 짤 때, 성폭행 관련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라.
- ‘낮선 사람의 위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낮선 사람’이라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평소 아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보도가 중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특정 관계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
- 아동 성폭행 피해자를 취재할 때,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는 데 있어 극도의 세심함과 최상의 판단력으로 임해야 한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건이 수 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 가족에게 보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 성폭행에 관련되거나 법원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사건을 보도할 때, 공개 가능과 공개 불가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아동 성폭행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며, 아동은 사회에서 특히 취약한 구성원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적합한 용어로 인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급적 ‘성폭행 피해자인 아동’ 등으로 언급해야 한다. ‘피해자’란 용어는 과거에 성적 학대를 겪었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 아동 성폭행을 경험한 사람들과 주위에서 성폭행을 겪고 있는 아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상 전화번호, 성폭행 상담 및 신고 번호 등이 있다.
-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성폭행 보도 시, 경찰이나 사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문 단체의 의견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2) 여성·아동 폭력 근절 단체의 가이드라인

호주 연방정부는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및 아동 보호”라는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여성·아동 폭력 근절 단체(Our Watch: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호주의 모든 주 정부가 회원이고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호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 단체는 언론이 (성)폭력을 다룰 때, 삼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Our WATCH, 2019).

- ‘가정 불화’, ‘불안정한 관계’, ‘아동 성학대’ 등 성폭력을 경시하거나 하찮게 보이게 하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성폭력이 “술, 마약, 정신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혹은 순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 극단적인 언어나 말장난, 혹은 불필요하게 상세한 정보로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법정, 재판 관련 소식이나 경찰 보고서 내용 중 선정적인 면만을 다뤄서는 안 된다.
-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종, 민족성 혹은 그 밖의 다른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 성폭력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든지, 밤늦게 다녔다든지, 혼자 다녔다든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 남성의 (성)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여성이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이 술, 마약, 정신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저질러졌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성폭력을 가중시켰을지는 몰라도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순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몇몇 자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엇보다도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성폭력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명백한 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는 표현이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황 설명 등을 삼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VI. 끝머리에

호주 언론이 성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정보공개 금지일 것이다. 펠 추기경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원이 적용하는 정보공개 금지는 호주의 정보공개 금지 명령권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서는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빅토리아 주에서 내려지는 명령 횟수가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호주 전역에서 발행되는 명령권의 절반 이상이 빅토리아 주에서 발행될 정도이다(BBC, 26 Feb 2019).

호주 언론인 협회(MEAA)는 “공개 금지 명령권은 19세기 인쇄매체 시대에 만들어진 구시대 법적 유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경 없는 디지털 인쇄 플랫폼과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수많은 해외 언론사이트가 범람하는 21세기를 대처할 수가 없(MEAA, 2019)”다고 하여 현 명령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과연 호주의 일개 도시에 있는 법원이 ‘언론 공개 금지 명령’이라는 낡고 부적당한 방법으로 글로벌 뉴스의 보급과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호주의 입법 평의회(Law Council of Australia) 역시 배심원들이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나 검색 엔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 언론의 간접 보도를 못 보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cited in MEAA, 2019).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법정 보도를 포함한 ‘열린 정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ABC (3 September 2016). How the justice system lets sexual assault victims down.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6-09-02/brock-turner-justice-system-sexual-assault-victims/7801784?nw=0>
- ABC (22 October 2019). Gag laws' stopping sexual assault survivors in the NT from speaking out.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10-22/nt-sexual-assault-victims-stopped-from-speaking-out/11622468>
- ABC (28 January 2020). Sexual assault Investigations in NSW are half as likely to lead to legal action as in Victoria.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20-01-28/statistics-on-sexual-assault-investigation-outcomes/11908098?nw=0>
- ABC (12 August 2019). 7:30 Report Finally, she can speak. Her abuser could speak out. And he did. Now, she can too.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8-12/grace-tame-speaks-about-abuse-from-schoolteacher/11393044?nw=0>
- ABS (2019). 4510.0 - Recorded Crime - Victims, Australia, 20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4510.0~2018~Main%20Features~Victims%20of%20Crime,%20Australia~3>
- ABS (2017). 4510.0 - Recorded Crime - Victims, Australia, 20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4510.02016>
- ANROWS (2015). *Media representa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 APC (2016). *Advisory Guideline on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Reporting*, Australian Press Council.
- APC (2007). Doe v ABC - a case note, Australian Press Council News, May. p.7.
- BBC (26 Feb 2019). George Pell: Why was conviction kept secret?.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47366083>
- Butler, D. (2007). *Jane Doe v ABC and Media Liability for Disclosing Personal*

- Information: Four More Bold Steps?*, Australian Law Teachers Association.
- Carroll, J. and Bennett, G. (27 July 2007). *Privacy protection in the courts: The Jane Doe case*. Retrieved from <https://www.claytonutz.com/knowledge/2007/july/privacy-protection-in-the-courts-the-jane-doe-case>
- Cooper, A. (26 May 2020). 'Multiple contempt trials loom over reporting of Pell's conviction', *The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from <https://www.smh.com.au/national/multiple-contempt-trials-loom-over-reporting-of-pell-s-conviction-20200526-p54whi.html>
- Country Court of Victoria (3 April 2007). *Jane Doe v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ase No. CI-03-07657) *Reason for Judgement*, Country Court of Victoria at Melbourne Civil Division.
- Crimes Act 2000* 578a.,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 Daily Hansard (24 June 2020). Sexual Offences(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Serial 117),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pp.23-25.
- Department of Justice (2016). A guide to the media for victims of crime, Victims Service, Department of Justice, Sydney. Retrieved from <https://www.5rb.com/case/jane-doe-v-australian-broadcasting-corporation-others/>
- Estrich, S. (1986). 'Rape', *Yale Law Journal* 95: 1087-1194.
- Evidence Amendment Bill 2020* (2020). Department of Justice, Hobart.
- Evidence Act 2001 Section 194* (2001). Department of Justice, Hobart.
- Funnell, N. (2020a) Gang rape victim becomes first Tasmanian to speak out following gag law reform. 24 April.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news-life/gang-rape-victim-becomes-first-tasmanian-to-speak-out-following-gag-law-reform/news-story/333ec2d6797147548180d1249c0f7dfb>
- Funnell, N. (2020b). #LetHerSpeak: Rape survivor breaks silence after NT gag law reform. 29 July.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news-life/letherspeak-nts-sexual-assault-gag-law-reformed/news-story/a08feace669b7afaafdd8ec33acaf98d>
- Funnell, N. (2019a). 'He had pure evil in his eyes': Schoolgirl's gang rape horror story finally revealed. 8 April.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lifestyle/real-life/he-had-pure-evil-in-his-eyes-schoolgirls-gang-rape-horror>

- story-finally-revealed/news-story/21652a823b912955e99715159d3d05b0
- Funnell, N. (2019b). I lost everything': Predator teacher's 'disturbing' interview. 22 August. Retrieved from <https://www.news.com.au/national/courts-law/i-lost-everything-predator-teachers-disturbing-interview/news-story/c2ae11e76793290fb4f6b4fbb422bc62>
- Greenleaf, G. (2007). *Doe v ABC - A new version of a privacy tort?, Unpublished case-not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 Gregory, P. (2006). *Court Reporting in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nell, L. (28 February 2017). It's never her fault: End the victim-blaming.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6-04-01/victim-blaming-never-her-fault/7288468?nw=0>
- High Court of Australia (2011). *Hogan v Hinch [2011] HCA 4*, 10 March. *Judicial Proceedings Reports Act 1958*,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Melbourne.
-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ern Territory, Legislation Scrutiny Committee (2020). *Inquiry into the Sexual Offences (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2019*, March 2020.
- Masters, S. (2011). Hogan v Hinch: Case Note, *Canberra Law Review*, 10, 197-220.
- MEAA (2019). Suppression orders: Suppression orders are 19th century tools incapable of responding to 21st century borderless digital publishing. 2 May. Retrieved from <https://pressfreedom.org.au/suppression-orders-c237df7dfee5>
- MEAA (2016). *FACT SHEET: The MEAA Journalist Code of Ethics*,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 Sydney.
- Meade, A. (2019). Up to 100 journalists accused of breaking Pell suppression order face possible jail terms. *The Guardian*, 26 February.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feb/26/dozens-of-journalists-accused-of-breaking-pell-trial-suppression-order-face-possible-jail-terms>
- Morgan, J. & Politoff, V. (2012). *Victorian print media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en*, VicHealth University of Melbourne.
- Ms FYLES (Attorney-General and Justice, NT) (2020). SEXUAL OFFENCES

- (EVIDENCE AND PROCEDURE) AMENDMENT BILL (Serial 117), Daily Hansard - Wednesday 24 June 2020 (Pages 23-25). Retrieved from https://parliament.nt.gov.au/data/assets/pdf_file/0009/899019/117-2019-Government-Response-24-June-2020.pdf
-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2018).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to open justic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Kerru Judd QC,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ions Victoria, June 22. Retrieved from <http://www.opp.vic.gov.au/News-and-Media/Latest-news/News/The-right-to-a-fair-trial-and-the-right-to-open-ju.aspx>
- Serious Sex Offenders Act 2005 (2005).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
- Sky News Australia (21 April 2020). Media Watch airs 'dishonest' defence of ABC's George Pell coverag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qmqkDq_TYEQ
- The Guardian (26 February 2019). The legal trials of George Pell - timeline.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feb/26/rise-fall-george-pell-timeline>
- The Washington Post (12 December 2018). Australian court convicts once-powerful Vatican official on sex-abuse-related charges.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ustralian-court-convicts-once-powerful-vatican-official-on-sex-abuse-related-charges/2018/12/12/da0d909c-fe20-11e8-a17e-162b712e8fc2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77e4abd4f153
- Timebase (6 December 2019). NT Introduces Bill To Reform Sexual Assault Speech Laws. Retrieved from <https://www.timebase.com.au/news/2019/AT04982-article.html>
- Trindade, D. & Condello, M. (28 Sep 2017). The implied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does not help an employee who disagrees with their employer's policies. Retrieved from <https://www.claytonutz.com/knowledge/2017/september/the-implied-freedom-of-political-communication-does-not-help-an-employee-who-disagrees-with-their-employers-policies>
- Victims Services (2011). *A guide to the media for victims of crime*. NSW Department of Justice: Sydney.
- Our WATCH (2019). *How to report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Melbourne.

WHM (2014a). *Reporting on Child Sexual Assault: A guide for ACT media*.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 Inc: Canberra.

WHM (2014b).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ACT media*. Women's Centre for Health Matters Inc: Canberra.

Wrongs Act 1958 (1958).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ydney.